특수형태근로종사자
교육 확대 시행

“ 방문판매원,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설치·수리원 및 화물차주 4개 직종 추가

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4개 직종의
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해서도 “안전보건교육”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.”

2021년 11월 19일부터 방문판매원,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설치·수리원 및
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
「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」과 「특별 교육」을 실시하여야 합니다!

- 건설장비(27종) 운전자, 골프장 캐디, 택배원, 퀵서비스 배달원, 대리운전자는 2020년 1월 16일부터 교육의무 적용 -

책임주체
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

강사자격

-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
-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
-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
-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

※「산업안전보건법」시행규칙 제26조 제3항, 「안전보건교육규정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21호)[별표1]참조

교육시간

최초노무제공시 교육	2시간 이상 (단기간,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,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)
특별교육	16시간 이상 (단기간,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)

※(단기간작업)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, (간헐적작업)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

교육내용

최초노무제공시 교육

-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
-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
-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-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-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
-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

※특별교육(39종)내용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[별표5] 참조

미디어 번호 | 2021-교육혁신실-794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KOREA OCCUPATIONAL SAFETY & HEALTH AGENCY

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

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**6개월 이상 경험**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.

교육대상		적용되는 교육시간	면제전 교육시간
최초노무 제공시 교육		1시간이상	2시간이상
	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	30분이상	1시간이상
특별교육		8시간이상	16시간이상
	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	1시간이상	2시간이상

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**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이 모두 면제**됩니다.

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**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(교육일지 등)를 비치**하여야 합니다. ※ 교육의무 미준수 시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교육대상 1명당 10만원~150만원)

안전·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 교육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공단 홈페이지 접속 > 자료마당 > 안전보건 자료실 > 검색창 "특고"

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다만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·보건조치 의무(작업시 준수사항,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지·알림·교육 등 포함)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
교육 대상 건설장비는 아래와 같이 **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7종 건설장비가 해당** 됩니다.

- 불도저
- 굴삭기
- 로더
- 지게차
- 스크레이퍼
- 덤프트럭
- 기중기
- 모터그레이더
- 롤러
- 노상안정기
- 콘크리트뱃칭플랜트
- 콘크리트피니셔
- 콘크리트살포기
- 콘크리트믹서트럭
- 콘크리트펌프
- 아스팔트믹싱플랜트
- 아스팔트피니셔
- 아스팔트살포기
- 골재살포기
- 쇄석기
- 공기압축기
- 천공기
- 항타 및 항발기
- 자갈채취기
- 준설선
- 특수건설기계
- 타워크레인

고용노동부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& HEALTH AGENCY